본 경정결정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03

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제42민사부

결 정

사 건 2017카경32363 판결경정

신 청 인 1. 주식회사 [redacted]은행
2. 주식회사 [redacted]은행
3. [redacted]유통 주식회사

피 신 청 인 1. [redacted]국
2. [redacted]시 [redacted]구
3. 파산자 주식회사 [redacted]의 파산관재인 A

주 문

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17가합50130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사건에 관하여 2017. 12. 1.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"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"를 "원고들과 피고 [redacted]국, 파산자 주식회사 [redacted]랜드의 파산관재인 A 사이에"로, 주문 제2항 중 "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"를 "원고들과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, 파산자 주식회사 [redacted]랜드의 파산관재인 A 사이에"로 각 경정한다.

이 유

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. 1. 5.

본 경정결정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03

재 판 장 판 사 **김한성**

판 사 **임상은**

판 사 **이정덕**